

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286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24-A-00부대 군사시설 개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현행 조례에
적합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55,898	—	55,898	100.0	
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55,898	감) 55,898	—	—	
	제2종일반주거지역	—	증) 55,898	55,898	100.0	

나.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결정(변경) 사유
	기정	변경		
성북구 외 5개소	제1종일반 주거지역	제2종일반 주거지역	55,898	군사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3. 주민 의견청취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청취 제외 대상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남주연(☎ 2133-8329)

붙임 1. 위치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도. 끝.